

의안번호	제 96 호
의 결 연 월 일	2022년 10월 일 (제 404 회)

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 
교육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김현문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2년 10월 5일

#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

## (김현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6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10월 5일

발의자 : 김현문, 이정범, 박병천,  
박용규, 박재주, 유상용,  
이윅희

### 1. 제안 이유

최근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대상이 아동·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 이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 내용

- 가. 학교, 학생,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- 나.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 수립을 규정함  
(안 제4조)
- 다.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관련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(안 제7조)
- 바.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해 규정함(안 제8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: 붙임

나. 비용추계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

다. 관계부서 협의: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성인식개선팀  
학교자치과 생활교육팀

##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2. “학생”이란 충청북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.
3. “디지털 성범죄”란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.

**제3조(교육감의 책무)**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생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,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·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계획의 수립 등)**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계획(이하 “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 및 피해자 보호·지원(이하 “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”이라 한다)을 위한 학생·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

2.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자료 발간 사항
  3.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사항
  4.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의 조치를 위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
-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예방 및 대응 교육)**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·대응 교육
2.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의료·법률 등 상담 및 신고 교육 등
3.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

**제6조(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)**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
2.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자 상담
3. 상담소, 보호시설, 전담의료기관 등 피해자 보호·지원 시설과의 연계
4.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
5.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에 필요한 사항

**제7조(협력체계 구축)**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을

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충청북도, 충청북도경찰청, 의료기관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**제8조(비밀 준수의 의무)**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 법령

## □ 유아교육법

[시행 2022. 7. 21.] [법률 제18298호, 2021. 7. 20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“유치원”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.

## □ 초·중등교육법

[시행 2022. 7. 21.] [법률 제18298호, 2021. 7. 20., 타법개정]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## □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25조의2(아동·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)

-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(이하 “디지털 성범죄”라 한다)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(정보통신망을 포

함한다)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(이하 “신분비공개수사” 라 한다)할 수 있다.

1.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

2. 아동·청소년에 대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 
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

**제11조(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·배포 등)** ①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·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20. 6. 2.>

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·대여·배포·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·운반·광고·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20. 6. 2.>

③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·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·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20. 6. 2.>

④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·청소년을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20. 6. 2.>

⑤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·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20. 6. 2.>

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

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한다. <신설 2020. 6. 2.> [제목개정 2020. 6. 2.]

**제15조의2(아동·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)**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·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
  2.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·권유하는 행위
-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·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.

□ **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**( 약칭: 성폭력처벌법 )  
[시행 2022. 7. 1.] [법률 제18465호, 2021. 9. 24., 타법개정]

**제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**

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(이하 “반포등”이라 한다)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(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8. 12. 18., 2020. 5. 19.>

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(이하 “정보통신망”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18. 12. 18., 2020. 5. 19.>

□ **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** ( 약칭 : 성폭력방지법 )  
[시행 2021. 7. 13.] [법률 제17895호, 2021. 1. 12., 일부개정]

**제5조(성폭력 예방교육 등)**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(이하 “국가기관등의 장”이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,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,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·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,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

12. 18., 2016. 5. 29., 2021. 1. 12.>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1. 21., 2014. 5. 28.>

#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재정수반요인

-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 (안 제4조)
-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 추진 (안 제6조)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안 시행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연 평균 예상 비용이 1억 원 미만임.